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21
----------	-------

발의연월일 : 2026. 10. 1.

발 의 자 : 어기구 · 조인철 · 김병주
문금주 · 박용갑 · 이재관
이정문 · 김남국 · 박홍배
권향엽 · 김교홍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율 관세, 수입규제, 무역구제조치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의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변화하면서 비우호적인 무역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또한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과 에너지 가격 상승, 탄소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철강산업의 생산 및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생산기반이 위축되거나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음.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방위산업, 에너지 등 국가 주력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내 철강 생산기반이 약화될 경우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조세지원 제도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실제 국내 철강 생산 활동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국내 철강 생산기지를 유지·증설하고 저탄소·고부가가치 철강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조세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정부 개정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는 철강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철강제품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함. 이에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철강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철강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나아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철강 분야를 포함함으로써 국내 생산과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기업의 해외 생산 이전을 방지하는 한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 29조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2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국내생산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품목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적격품목 판매량에 제3항에 따른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산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생산할 것

나. 적격품목 생산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제24조에 따

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닐 것

2. 판매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판매할 것

나. 적격품목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다만, 국내에서 공급받은 적격품목이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적격품목이 생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라. 판매상대방이 해당 내국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마. 판매된 적격품목이 중고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적격품목”이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철강,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탄소중립 등 녹색전환 및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2. 현재 수익성이 부족하나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3.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적격품목의 공제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품목의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격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생산지역에 따른 비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비율

3. 과세연도별 비율

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0

나. 203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75

다.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50

라.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25

④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 중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제1항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은 생산비용, 생산·판매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해당 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할 때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범위, 생산지역의 판정방법,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적격품목이 다른 적격품목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경우의 공제 적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 앞의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삭제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에 관한 특례) ① 내국인이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중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고 제29조에 따른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내국인은 제24조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3(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의 산정 및 그 밖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적격품목 생산·판매 기업 및 그 밖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적격품목의 생산비용 세부내역, 판매가격, 생산·판매량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만 제출받은 목적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경제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2.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 산정 및 그 밖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

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3. 기업의 경영 또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⑤ 재정경제부장관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의 산정 및 그 밖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료나 의견의 제출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 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 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 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 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 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 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 을 적용한다.	<u>제4절의2 국내생산촉진을 위한</u> <u>조세특례</u> 제29조(국내생산세액공제) ① 내 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 품목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 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적격품목 판매량에 제3항에 따른 공제액 을 곱한 금액을 해당 적격품목 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 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1. 생산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생산 할 것 나. 적격품목 생산에 중요하 고 핵심적인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 적격품목 생산 과 직접 관련된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
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
은 자산이 아닐 것

2. 판매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판매
할 것

나. 적격품목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다만, 국내에서
공급받은 적격품목이 공급
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
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적격품목이 생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다
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라. 판매상대방이 해당 내국
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영
리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
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할 것

마. 판매된 적격품목이 중고
품이 아닐 것

② 제1항에서 “적격품목”이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
지, 반도체, 철강,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
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
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탄소중립 등 녹색전환 및 공
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차원
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것

2. 현재 수익성이 부족하나 시
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
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3.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
대적으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
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적격품목의 공제액은 제1호
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비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품목의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격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생산지역에 따른 비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비율

3. 과세연도별 비율

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3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0

나. 203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75

다.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50

라.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00분의 25

④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 중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
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
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에서 직전 과세연도까
지 제1항에 따라 실제로 공제
받은 금액을 뺀 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은
생산비용, 생산·판매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해당 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
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0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
할 때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
련된 비용의 범위, 생산지역의
판정방법, 적격품목 생산에 직
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범위, 적격품목이 다른 적격품
목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경우의
공제 적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삭 제>

제29조의2(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내국인이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하여 2026
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
세연도 중 제24조에 따른 공제
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
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국세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
고를 하고 제29조에 따른 공제
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내국인은 제24조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
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3(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의 산정 및 그 밖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적격품목 생산·판매 기업 및 그 밖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적격품목의 생산비용 세부내역, 판매가격, 생산·판매량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내생산
세액공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만
제출받은 목적에 한정하여 열람
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경제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료

2. 적격품목의 선정, 공제액 산
정 및 그 밖에 국내생산세액
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
장을 초래하는 자료

3. 기업의 경영 또는 영업상 비
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할 우
려가 있는 자료

⑤ 재정경제부장관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

출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적격품목의 선
정, 공제액의 산정 및 그 밖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의 운영
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료나 의견의
제출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